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12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8월 12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

○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

(2020년 9월 8일 상정, 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권성연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20. 4. 7.)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코로나-19 지역사고 수습본부 대책회의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기한 및 위원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전자투표틀” 을 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 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 로 수정하고, 후단의 “전자투표틀” 을 “전자투표 등을” 로 수정(안 제4조제1항)
- 나.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고,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4조제5항)
- 다. 안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라. 안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(안 제6조제5항)
- 마. “영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 수정(안 제10조제1항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812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함)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 선출방식과 선출기한 조정 및 임기개시일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이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1)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,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

-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‘전자투표’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「초·중등교

-
- 1)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⑧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‘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’로 구체화하였으며,

동조 제5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으로²⁾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생각됩니다.

2)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(위원의 임기)

-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선출기한이 조정된 경우 차후 선출된 위원 임기개시일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5항과 연동되는 사항이며 그 임기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이와 더불어 동조 제5항에서는 선출기한의 조정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.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는 선출기한의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 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 로, 후단의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투표 등을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“재난” 이라 한다)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, 우편, 전자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4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 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영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③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<u>영</u> <u>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</u>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<u>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</u> <u>수 있으며, 이 경우 제3항에서</u> <u>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</u> <u>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4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</u> <u>경우에는 위원</u>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위원</u>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<u>다음 위원</u>이 선출될 때까지 <u>현재</u> <u>위원</u>의 임기 및 <u>위원장·부위원장</u> <u>임기</u>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 원장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